

#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71
------	-----

2022.12.21.  
기획경제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년 10월 17일, 채수지 의원 외 22명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21일

다. 상정결과 :

####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】

-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(2022.12.21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#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한영희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)

#### 1. 제안이유

- 상설운영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상설 전환하는 한편,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민간위탁 사무규정에 부합하도록 기능 재정비가 필요함.
-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종료된 사업 등은 관련 조항 정비 및 현행화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(안 제9조)
- 나.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을 사업 집행 중심으로 변경(안 제12조)
- 다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지 무상 임대 규정 삭제(안 제15조)
- 라. 사회적경제 특구(한시사업) 등 종료사업 관련 조항 삭제 및 현행화(안 제3조, 제8조, 제10조, 제16조)

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개최실적이 저조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비상설화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 정비, 관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유지 무상임대와 한시사업으로 종료된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규정의 삭제로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됨.

### 나.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의 연혁

-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,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으며 이윤의 극대화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의미함.

- 서울시는 2011년부터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며, 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(2012.7.30. 제정), 「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」(2014.3.20. 제정),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(2014.5.14. 제정)를 통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.
- 당초에는 사회적경제의 저변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중심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했으나, ‘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2.0’을 발표(2019.3.14.)하면서 ▶시민생활문제의 사회적경제 방식해결, ▶융합형 민민·민관협치 강화, ▶공간 및 사회적금융 지원을 통한 생태계 기반 강화, ▶공공 및 민간판로 확대, ▶국제연대와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됨.
- 이처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은 2012년 대비 약 7.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.

### < 서울소재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>

(단위: 개)

구 분	2012	2020	2022.9.
<b>합 계</b>	<b>788</b>	<b>6,140</b>	<b>6,121</b>
사회적기업	533	1,003	1,015
인증	169	518	592
예비	364	485	423
협동조합	16	4,338	4,858
일반	15	3,761	4,072
사회적	1	623	786

마을기업	72	113	120
지정	72	96	112
예비	-	17	8
자활기업	167	127	128

- 그러나 사회적경제위원회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이 민관협력 구조로 운영되면서 ▶과도한 정책예산 의존, ▶전문인력 부족과 이해충돌, ▶일부 단체의 독점적 사업추진 등의 문제가 발생함.
- 또한, 일부 사업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 낮은 이해도와 복잡한 사업구조의 문제가 반복 지적되었고, 명확한 성과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·확대<sup>1)</sup>하거나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를 이유로 자치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, 과도한 보조금을 편성하는 문제<sup>2)</sup>도 있었음.
-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종료된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.

## 다. 주요 개정사항 검토

### (1) 사회적경제위원회 관련 규정의 정비 및 비상설화(안 제8조, 안 제9조)

- 개정안은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신설(2015.7.30.)되면서 사회적경제 기본

1)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, 사회성과보상사업,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등

2)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,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등

계획의 심의·의결 주체가 희망경제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로 변경되었으나, 조례의 해당 조문에는 희망경제위원회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정비함(안 제8조).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사회적경제 기본계획) ① 시장은 제9조의 <u>희망경제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·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~ ⑥ (생략)</p>	<p>제8조(사회적경제 기본계획) ① ----- <u>사회적경제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- 또한,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화하면서 위원의 구성, 임기, 해촉, 정기회의 등의 상설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, 회의 개최 요건을 변경함(안 제9조).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사회적경제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심의·자문한다.</u>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<u>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④ 위원장은 <u>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, 부위원장은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이 된다.</u></p> <p>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, 시장이 임명 또는 <u>위촉한다.</u></p> <p>1.·2. (생략)</p>	<p>제9조(사회적경제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심의·자문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구성하고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</u></p> <p>④ ----- <u>위촉직</u> ----- ----- <u>시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이 맡는다.</u></p> <p>⑤ ----- ----- <u>위촉하되,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.</u>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

<p>3. 시의 예산 업무 담당 국장</p> <p>4. 5. (생략)</p> <p>⑥ (생략)</p> <p>⑦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⑧ <u>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u>  <u>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</u>  <u>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</u>  <u>3.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</u>  <u>4.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</u></p> <p>⑨ <u>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0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⑩·⑪ (생략)</p>	<p>&lt;삭제&gt;</p> <p>4.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⑨ <u>시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⑩ <u>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⑪·⑫ (현행 제10항 및 제11항과 같음)</p>
--	--

○ 사회적경제위원회는 당초 희망경제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로 운영되었으나,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심의·자문하기 위해 신설됨.

- 주요 심의·자문사항은 ▶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, ▶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, ▶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, ▶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 등임.

- 위원은 당연직<sup>3)</sup>과 시의원 2명을 포함한 위촉직 20명 이내로 구성

3) 행정 1부시장,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, 시의 예산 업무담당 국장

되나, 2기 위원회 활동 종료(2017.4.24.~2021.4.23) 후 신규 위촉이 이루어지지 않음.

-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최근 5년간 회의 개최 횟수가 3회<sup>4)</sup>에 불과하고, ‘2022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’ (2022.4.7.)에 따라 최근 1년 이상 개최 이력이 없어 비상설화가 추진됨.

### < 2022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 요약 >

구 분		해당 위원회
조례 개정 (14)	폐 지 (3)	경제민주화위원회,·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, 희망경제위원회
	통폐합 (2)	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+감정노동종사자관리보호위원회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(→ 건설기술심의위원회)
	비상설화 (9)	목적·기능상 필요하나 운영실적 저조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, 주소정보위원회, 주거정책심의위원회,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, 주민투표청구심의회, 유통분쟁조정위원회, <b>사회적경제위원회</b> , 사회주택위원회,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
법령 개정건의 (6)	폐 지 (2)	분쟁조정위원회,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회
	비상설화 (4)	목적·기능상 필요하나 운영실적 저조 공동구협의회,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,·대부분쟁조정위원회, 산지관리위원회
방침 수립 (9)	폐 지 (1)	생활문화협치위원회
	운영 활성화 (8)	설치 2년 이하 위원회, 미개최 1년인 위원회 등 DMC기획위원회, 물가대책위원회,·기반시설관리위원회, 물순환시민위원회,·청계천시민위원회, 서울교육복지시민관협의회,·창업정책위원회, 청소년육성위원회

- 매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정기회와 임시회가 개최되고 상시적으로 위원이 구성되는 상설위원회와 달리 비상설위원회는 전문가 인력풀을 이용하여 필요시에만 위원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함.

4) 2017년 사회적경제 종합계획 및 운영방향 검토(2017.4.24.), 사회적경제 활성화 2.0 종합계획(안) 검토(2019.4.3.), 제2차 서울시 협동조합 기본계획 의결(서면, 2020.12.18.~24.)

- 개최실적이 부진하여 형해화(形骸化)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이해할 수 있음.
- 다만, 최근 1년간 위원이 위촉되지 않아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는 점과 정책 집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자립성 강화 등의 대책을 논의할 상시적인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.
- 또한, 정책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예산과 조직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주요계획을 심의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화하면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반적인 약화를 불러올 수 있음.

(2)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정책 관련 기능 삭제(안 제12조)

- 개정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(이하 “사경센터”)의 정책 협의·조정,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등의 기능을 삭제하고, 사업 집행 기능 중심으로 전환함.

현행	개정안
제12조(지원센터의 기능)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 1.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·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 2.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	제12조(지원센터의 기능) ----- -----.  1.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 2.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 및 판로지원



<u>3.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</u>	<u>3.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및 교육</u>
<u>4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</u>	<u>4.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</u>
<u>5.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,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·운영지원</u>	<u>5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</u>
<u>6.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</u>	<u>6.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</u>
<u>7.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</u>	<삭 제>
<u>8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체계 구축</u>	<삭 제>
<u>9.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</u>	<삭 제>
<u>10.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</u>	<삭 제>

- 이는 현재 사경센터의 기능 중 정책 협의·조정,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등은 서울시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무이며, 민간위탁 사무는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권력적 사무에 국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.
- 또한, 사경센터는 종전에 수행한 연구 사업 63건 중 52건을 외부용역이나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고유사업의 제3자 위탁을 금지한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위반한 점을 고려한 것임<sup>5)</sup>.

5) 제15조(수탁기관의 의무) ① ~ ⑤ (생략)

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. 다만,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.

**<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 사업 현황 >**

구 분	계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
계	63	10	9	9	9	1	5	5	8	4	3
자체연구	11	2	3	-	-	-	-	-	1	2	3
용역발주	25	4	1	2	3	1	2	5	5	2	-
지원사업	27	4	5	7	6	-	3	-	2	-	-

- 다만, 사경센터가 2013년부터 동일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민간위탁 대상 심의와 적격자심의를 4차례 받았으나 정책 관련 업무가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어 민간위탁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제시된 바 없음.
- 또한, 그동안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직·간접적인 연계를 통해 수립되던 기본계획이 사경센터의 사업에서 삭제되면서 관주도의 사업설계가 이뤄질 우려가 있음.

**(3) 공유지 무상임대 근거 삭제(안 제15조)**

- 개정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이나 운영시에 공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.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시설비 등 지원) ①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,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·용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 및 무상 임대 할 수 있다.	제15조(시설비 등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임대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의 면제에 대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,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법률<sup>6)</sup>에는 무상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음.

### <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의 공유재산 면제 규정 >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2.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
3.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
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제34조(대부료의 감면)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2.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-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공유지(공유재산)에 대한 무상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을 위반하게 됨.

-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‘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’(2022.6.)에서 감사대상 기간(2017.7.~2021.11.) 동안 사경센터 대관 1,619건 중 13건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을 위반하여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대관료를 전액감면한 점을 지적하며, 현행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.

6)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, 「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중증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 특별법」

- 개정안은 이 같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참고하여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.

(4) 사회적경제 특구 관련 조항 삭제(안 제3조, 안 제10조, 안 제16조)

- 개정안은 종료된 사회적경제 특구와 사회적경제 예비특구에 대한 정의(안 제3조), 지정 및 지원 근거(안 제10조), 사업비 지원 근거(안 제16조)를 삭제함.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“사회적경제 특구”란 지역의 특성과 결합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사업모형을 개발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성공 사례를 창출한 지구를 말한다.</p> <p>9. “사회적경제 예비특구”란 “사회적경제 특구”로 지정되기 이전의 단계로, 서울특별시장이 “사회적경제 특구”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구를 말한다.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
<p>제10조 (사회적경제 특구의 지정 및 지원)</p> <p>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지역기반을 강화하고 서울형 사회적경제 창출을 위하여 자치구와 협력하여 “사회적경제 예비특구”를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“사회적경제 예비특구”를 “사회적경제 특구”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“사회적경제 예비특구”로 지정된 자치구 및 참여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“사회적경제 예비특구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</p> <p>2. 우선구매, 공간, 금융, 교육, 연구개발 지원 등에 있어 우선 지원</p>	<p>&lt;삭 제&gt;</p>

<p>3. 시 또는 자치구 관련 부서의 협업 및 의견수렴</p> <p>4. 그 밖에 “사회적경제 예비특구”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</p> <p>④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“사회적경제 특구”와 연계가능한 사업 추진 시 “사회적경제 특구”로 지정된 자치구 또는 참여기업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.</p> <p>제16조(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)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</p> <p>5. ~ 8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16조(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5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

-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고, 지역 산업과 자원 간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됨.

### <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개요 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원기간 : 최대 3년 6개월(1년 단위 연장심사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)</li> <li>○ 추진단계 : 준비사업(계획 수립)과 본사업(사업 추진)으로 나누어 추진</li> <li>○ 지원기준 : 자치구별 3년 6개월 동안 최대 550백만원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준비(최대 50백만원) → 1년차(최대 1억원) → 2·3년차(최대 각 2억원)</li> </ul> </li> <li>○ 주요사업 : 지역특성과 결합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개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울형 사회적경제 대표 분야 및 산업 발굴</li> <li>-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활성화 촉진</li> <li>- 사회적경제와 지역산업 및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구조 형성</li> </ul> </li> <li>○ 추진체계 : 지역 내 여러 단체 간 협의체 혹은 기업 간 컨소시엄 형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치구, 사회적경제기업, 사회적경제지원센터, 대학, 주민 등 참여</li> </ul> </li> </ul>	
구분	역할
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치구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 전략·사업모델 구축 자문, 전문가 연결</li> <li>- 자치구 민간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대상 공동교육 진행</li> <li>- 서울연구원 중심으로 준비사업 평가 및 본사업 추진시 지원 방안 연구</li> </ul>
자치구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 선정 공모 지원, 전략 수립 및 사업 추진</li> <li>- 준비사업 종료시 사업조직(사회적경제기업 등) 형태의 실행기구로 발전</li> <li>- 지역 생태계조성사업단, 산업, 대학, 주민 등 다양한 지역 주체 참여</li> </ul>

- 사회적경제 특구로 선정된 12개 자치구에는 각각 4억원에서 5억 5천만원까지 지원하여 총 60억 9천 8백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일부 자치구<sup>7)</sup>에서는 지역기반 사업모델로 제시되는 성과를 거두었음.

### <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지원 내역 >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	총계
총계	293	655	1,625	1,942	1,043	340	200	6,098
관악구	50	50	200	193	-	-	-	493
광진구	48	130	198	200	-	-	-	576
노원구	40	100	200	200	-	-	-	540
마포구	50	50	199	200	-	-	-	499
성동구	55	140	200	155.6	-	-	-	550.6
성북구	50	90	200	195	-	-	-	535
강동구	-	20	110	179.7	214	-	-	523.7
강북구	-	20	94	139.6	154	-	-	407.6
금천구	-	20	90	200	216	-	-	526
은평구	-	15	109	166.2	194	-	-	484.2
동작구	-	20	25	88	158	140	-	431
서대문	-	-	-	25	107	200	200	532

- 그러나 당초 전문가 연계를 위해 구성한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단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, 심사선정과 사업추진 시 사업모델의 적정성, 확장성, 지속가능성 분석의 한계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웠음.
- 또한, 복잡한 추진체계와 시장분석 능력 부족, 돌봄이나 급식에 집중된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중도 포기하는 자치구가 발생하면서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고 서대문구에 대한 지원을

7) 강동구 : '강동구가죽패션창업지원센터', 광진구 : 돌봄식당 '열린밥상', 노원구 : 되살림가게, 공동선별작업장

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함.

- 이에 따라 종료사업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삭제하여 조례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음.

## 라. 종합의견

- 개정안은 개최실적이 저조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비상설화,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 개편, 공유재산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 정비, 종료된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관련 규정의 삭제로 조례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입법적 효과가 있음.
- 다만, 이같은 입법조치에 따라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형해화(形骸化)되고, 지난 10년간 성장해온 사회적경제 분야의 정책적 추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.
- 한편, 개정안의 개정사항 외에도 현행 조례는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<sup>8)</sup>, 다른 조례와 중복된 규정<sup>9)</sup> 등이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함.

---

8) 제19조(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등의 지원), 제21조제2항제5호 국제사회적경제 협의체와 사무국 운영 및 협력을 위한 지원 등

9) 제16조(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)는 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, 제18조(우선구매 등 지원)는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」와 중복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

#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채수지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71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7일

발 의 자: 채수지, 경기문, 곽향기,  
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 
김용일, 김원중, 김지향,  
김형재, 김혜영, 박상혁,  
박영한, 서상열, 송경택,  
이종태, 이종환, 장태용,  
최민규, 최유희, 허·훈,  
홍국표, 황철규 의원(23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상설운영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상설 전환 하는 한편,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민간위탁 사무규정에 부합하도록 기능 재정비가 필요함
-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종료된 사업 등은 관련 조항 정비 및 현행화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(안 제9조)
- 나.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을 사업 집행 중심으로 변경(안 제12조)
- 다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지 무상 임대 규정 삭제
- 라. 사회적경제 특구(한시사업) 등 종료사업 관련 조항 삭제 및 현행화(안 제3조, 제8조, 제10조, 제16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##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희망경제위원회”를 “사회적경제위원회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·자문한다”를 “심의·자문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고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행정1부 시장과 위촉직”을 “위촉직”으로, “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이 된다”를 “시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이 맡는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촉한다”를 “위촉하되,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⑨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⑩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 한다.

1.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
2.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 및 판로지원
3.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및 교육
4.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
5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
6.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15조제1항 중 “임대 및 무상 임대”를 “임대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“<u>사회적경제 특구</u>”란 지역의 특성과 결합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성공 사례를 창출한 지구를 말한다.</p> <p>9. “<u>사회적경제 예비특구</u>”란 “<u>사회적경제 특구</u>”로 지정되기 이전의 단계로, 서울특별시가 “<u>사회적경제 특구</u>”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구를 말한다.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 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
<p>제8조(사회적경제 기본계획) ① 시장은 제9조의 <u>희망경제위원회</u>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·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</p>	<p>제8조(사회적경제 기본계획) ① - ----- <u>사회적경제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여야 한다.

② ~ ⑥ (생략)

제9조(사회적경제위원회) ① (생략)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~ 5. (생략)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, 부위원장은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이 된다.

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,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·2. (생략)

3. 시의 예산 업무 담당 국장

4.·5. (생략)
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사회적경제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 심의·자문할 수 있다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구성하고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④ ----- 위촉직 -----  
----- 시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이 맡는다

⑤ -----  
----- 위촉하되,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4.·5. (현행과 같음)

⑥ (생략)

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
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
3.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4.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<삭제>

⑨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신 설>

⑩ · ⑪ (생 략)

제10조 (사회적경제 특구의 지정

및 지원)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 
의 지역기반을 강화하고 서울형  
사회적경제 창출을 위하여 자치  
구와 협력하여 “사회적경제 예  
비특구”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 
수행한 “사회적경제 예비특구  
“를 “사회적경제 특구“로 지정  
할 수 있다.

③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“사회  
적경제 예비특구”로 지정된 자  
치구 및 참여 기업에 다음 각  
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“사회적경제 예비특구” 사업  
추진에 필요한 사업비
2. 우선구매, 공간, 금융, 교육,  
연구개발 지원 등에 있어 우  
선 지원
3. 시 또는 자치구 관련 부서의  
협업 및 의견수렴
4. 그 밖에 “사회적경제 예비특

⑩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 
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 
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⑪ · ⑫ (현행 제10항 및 제11항  
과 같음)

<삭 제>



구”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  
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④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“사  
회적경제 특구“와 연계가능한  
사업 추진 시 “사회적경제 특구  
“로 지정된 자치구 또는 참여기  
업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검토해  
야 한다.

제12조(지원센터의 기능) 지원센  
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 
한다.

1.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  
의·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  
의 종합적 지원
2.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
3.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  
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
4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 
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
5.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 
지원 및 업종, 지역 및 광역단  
위 네트워크 구축·운영지원
6.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  
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

제12조(지원센터의 기능) -----  
-----  
---

1.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  
영에 필요한 컨설팅
2.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  
및 판로지원
3.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및 교육
4.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 
지원
5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 
홍보 및 인식 제고
6.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 
지원에 필요한 사항

7.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

<삭 제>

8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

<삭 제>

9.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

<삭 제>

10.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

<삭 제>

제15조(시설비 등 지원) ①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,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·용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 및 무상 임대 할 수 있다.

제15조(시설비 등 지원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임대 -----  
-----.

② (생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)

제16조(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)

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생략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

<삭 제>

5. ~ 8. (생략)

5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생략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